

	<h2 style="margin: 0;">학생상벌규정</h2>	제정일자	1983. 3. 1
		개정일자	2016. 8. 1
		페이지	1-9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49조 및 제50조에 의거 학생의 상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학생 상벌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벌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교무회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되며 유고시에는 교학처장이 된다.(개정 2009. 3. 1, 2012. 2. 1, 2016. 8. 1)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칙 제49조 포상에 관한 사항
- 2. 학칙 제50조 징계에 관한 사항
- 3. 기타 상벌에 관한 사항

제 2 장 포 상

제4조(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1. 학교와 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학생(개정 2009. 3. 1)
- 2. 타학생에게 모범이 될만한 선행을 하였거나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여 학교의 명예를 높인 학생(개정 2009. 3. 1)

제5조(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한다.

- 1. 공로상(개정 2009. 3. 1)
 - 가. 재학 중 사상이 건전하고 대학 발전에 공적이 있거나 지도력이 탁월하여 학생 자치활동에 공로가 현저한 자
 - 나. 학술, 과학, 기술, 예술부문에서 우수한 창의적 공적으로 학교의 명예를 높인 자
 - 다. 체육을 통하여 학교의 명예를 높인 자(전국체육대회 이상 규모의 대회)(개정 2009. 3. 1)
- 2. 모범상 : 타학생의 모범이 될만한 선행을 하였거나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여 학교의 명예를 높인 자(개정 2009. 3. 1)

제6조(포상자 선정기준) 삭제(개정 2009. 3. 1)

제7조(포상발의) 제5조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소속 학부(학과, 전공) 지도교수는 다음 서식에 의하여 포상을 발의할 수 있다.

- 1. 표창추천서(별지서식 제1호)
- 2. 공적조서(별지서식 제2호)

제8조(포상시기) 포상은 학기 말에 행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 포상할 수 있다.

제9조(포상금 지급) 삭제(개정 2009. 3. 1)

제10조(이중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 3 장 징 계

제11조(징계) 학칙 제50조에 의거 학생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한다.(개정 2009. 3. 1)

제12조(근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3일 이상 7일 이내의 근신에 처한다.

- 1. 교직원에게 불손한 언행을 한 자
- 2. 학생 품의를 떨어뜨리는 언행을 한 자
- 3. 면학분위기를 흐리게 한 자
- 4. 학생 본분을 망각한 행위를 한 자

제13조(유기정학)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7일 이상 14일 이내의 유기정학에 처한다.

- 1. 제1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법한 자
- 2. 학우에게 협박 또는 폭행한 자
- 3. 단체 행사를 교란하게 하는 행동을 하거나 동조한 자
- 4.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자
- 5. 대학교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나 인쇄물을 부착하거나 배포한 자(개정 2012. 2. 1)

제14조(무기정학)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15일 이상의 무기정학에 처한다.

- 1.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법한 자
- 2. 이유없이 교직원을 비방하거나 유언비어를 퍼뜨린 자
- 3. 학우에게 집단폭행 한 자
- 4. 고의로 학교시설을 파괴하거나 허가없이 외부에 반출한 자
- 5. 도박행위를 한 자
- ②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자의 징계를 해제하고자 할 때는 당해 학부 지도교수의 지도결과보고서를 첨부, 총장이 정상을 참작하여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09. 3. 1)

제15조(제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적에 처한다.

- 1. 제14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법한 자
- 2. 대학교 내에서 정치활동을 하거나 할 목적으로 단체조직이나 선동적인 행위를 한 자(개정 2012. 2. 1)
- 3. 총장의 허가없이 집단적 행위로 수업이나 시험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케한 자(개정 2009. 3. 1)
- 4. 학교 당국의 허가없이 단체를 조직하거나 집회를 한 자
- 5.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자
- 6. 교직원에게 반항하여 그의 직분을 욕되게 한 자
- 7. 교외에서 대학의 명예를 심히 훼손시킨 자
- 8. 대학교에 붙은 인쇄물을 부착하거나 살포한 자(개정 2012. 2. 1)

제16조(징계절차) ①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교학처장은 1호에서 3호까지의 서류를 구비하여

상벌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하고 총장 재가시에는 4,5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9. 3. 1, 2012. 2. 1, 2016. 8. 1)

1. 사고경위서
2. 비위사실진술서(별지서식 제3호)
3. 징계혐의자 명단(별지서식 제4호)
4. 징계의결서(별지서식 제5호)
5. 징계위원회록 사본

② 상벌위원회는 징계대상 학생을 출석시켜 진술 기회를 부여 할 수 있다.

③ 상벌위원회는 징계대상 학생에 대하여 징계에 따른 소정의 과제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17조(권리상실) 이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은 자는 학생으로서 부여받은 모든 권리가 상실 또는 정지된다.

제18조(처벌감면) 총장은 징계 대상자나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벌을 감면 할 수 있다.(개정 2009. 3. 1)

제19조(통보) 교학처장은 징계사실을 관계부서와 학부모 및 본인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12. 2. 1, 2016. 8. 1)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학생상벌위원회 의결에 따른다.
2.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종전 규정은 폐지한다.
3. 이 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제1호)

표창추천서					
소속		학년		학번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포상종류					
추천내용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200 년 월 일 추 천 인 : 인 충 청 대 학 교 총 장 귀하					

(별지서식 제2호)

공적조서					
소속		학년		학번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간부활동 및 특별활동					
공적사항 (육하원칙에 의거작성)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조 사 자 : 인 확 인 자 : 인 충 청 대 학 교 총 장 귀하					

